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증개정령

- 보건복지부령 제114호(1999.5.29) -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증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증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으로 한다.

제4조증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을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로, “회수”를 “횟수”로 한다.

제6조증 “성병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진 자”를 “성병에 감염된 자로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자”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9조(전염병환자의 발생 보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환자 수 등을 전염병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법에 의한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고,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별표 1의 제목중 “진단항목별회수”를 “진단항목별 횟수”로 한다.

별표 2의 제목중 “회수”를 “횟수”로 하고, 동표의 대상란 제2호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3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조 제4조 및 별표 2의 대상란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9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공중위생법 제13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

현 행	개 정
제4조(정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식품 위생법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공중위생법 제13 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진단항목 및 그 회수는 별표 2와 같다.	제4조(정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회수.....
제6조(성병감염자의 치료) 시·도지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결과 성병에 감염 된 것으로 밝혀진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6조(성병감염자의 치료)성병에 감 염된 자로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자.....
제7조(건강진단 의료기관) ①이 규칙에 의한 건강 진단은 보건소장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의료 기관(이하 "지정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②시·도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의료기 관을 지정함에 있어서는 별표 1 및 별표 2의 규정에 의한 진단항목의 진단에 필요한 시설·장비 및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는 의료기관중에서 이를 지 정하여야 한다.	제7조(건강진단의 실시) 이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 의료법에 의한 종합 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
제8조(건강진단수첩)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실시한 보건소 또는 지정 의료기 관은 그 진단을 받은 자에 대한 건강진단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의 건강진단수첩에 기재하여 이를 교부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서식의 건강진단수첩 발급대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고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삭 제〉 — — — — — —
제9조(보고) ①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 건강진단을 실시한 지정의료기관의 장은 매월의 건강진단실적을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다음달 5일까지 관할 보건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보건소장은 매분기 당해보건소의 건강진단실적과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받은 지정의료기관의 건강진단실적을 종합하여 매분기가 종료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15일까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전염병환자의 발생 보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환자 수 등을 전염병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역보건 법에 의한 관할 보건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 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고, 의료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정 84.9. 8 보건사회부령 제754호

개정 88.7. 4 보건사회부령 제820호

개정 93.7.27 보건사회부령 제912호

개정 96.8.20 보건복지부령 제32호(공중위생법시행규칙)

개정 98.1.10 보건복지부령 제58호

개정 99.5.29 보건복지부령 제114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는 경우와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88·7·4, 96·8·20, 99·5·2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개정 88·7·4, 93·7·27, 98·1·10)

1. “성병”이라 함은 매독·임질·연성하감·비임균성요도염·성병성임파육아종 및 서혜육아종을 말한다.
2. “특수업태부”라 함은 성병의 예방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3. “유홍접객원등”이라 함은 식품위생법시행령 제7조제8호 라목 및 동령 제8조제1항제1호·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홍주점영업에 종사하는 유홍종사자중 유홍접객원 및 댄서를 말한다.
4. “혈청검사”라 함은 매독혈청검사를 말한다.
5. “에스·티·디검사”라 함은 임질에 관한 검사를 말한다.
6. 삭제<98·1·10>
7. “결핵”이라 함은 폐결핵을 말한다.
8. “전염성피부질환”이라 함은 나병등 세균성피부질환을 말한다.

제3조(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할 자의 범

위등)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직업에 종사하는 자와 그 진단항목 및 회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정기건강진단) 식품위생법 제26조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34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의 진단항목 및 그 횟수는 별표 2와 같다.(개정 96·8·20, 99·5·29)

[전문개정 88·7·4]

제5조(수시건강진단) ①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전염병예방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성병에 감염되어 그 전염을 막애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는 때에는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을 것을 통지하여야 하며 그 통지를 받은 자는 지체없이 성병에 관한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개정 98·1·10)

②전염병예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제4조 정기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중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자는 전염병의 감염여부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6조(성병감염자 치료) 시·도지사는 제3조 내지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결과 성병에 감염된 자로서 입원치료를 요하는 자에 대하여는 의료보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료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99·5·29)

제7조(건강진단 의료기관) 이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은 지역보건법에 의한 보건소와 의료법에 의한 종합병원·병원 또는 의원(이하 “의료기관”이라 한다)에서 실시한다.(개정 98·1·10, 99·5·29)

제8조 <삭제 99·5·29>

제9조(전염병환자의 발생 보고 등) 의료기관의 장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한 결과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염병환자 수

등을 전염병예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 소장을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 을 말한다)에게 신고 또는 보고하고, 의료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기록부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98·1·10, 99·5·29>

제10조(수수료) 보건소에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건강진단을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 1천500 원을 당해 보건소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간염에 관한 검진을 받고자 하는 자는 1천4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88·7·4, 98·1·1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성병검진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건강진단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건강진단수첩은 이 규칙에 의하여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식품위생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제2항 내지 제6항 및 별지 제11호서식을 각각 삭제한다.

①식품 또는 첨가물을 채취, 제조, 가공, 조리, 저장,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자와 완전 포장된 식품 또는 첨가물을 운반 또는 판매하는데 종사하는 자는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지 아니 할 수 있다.

②이용사및미용사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를 삭제한다.

③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호 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안마사, 때밀이, 터키탕의 입욕보조자에 대하여는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 건강진단을 받게 할 것

부 칙<88·7·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93·7·27>

이 규칙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96·8·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8조 생략

제9조(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의 개정에 따른 경과조치)

종전의 터키탕업소에 두는 이성의 입욕보조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부칙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정된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 제1조, 제4조 및 별표 1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일부터 2년까지 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규칙의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 칙<98·1·1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건강진단수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교부된 건강진단수첩은 이 규칙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③(서식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작된 건강진단수첩의 서식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계속 사용할 수 있다.